2025년도 「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」 사업 기업지원 사업 공고

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「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」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일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

1. 사업개요

- 친환경차 사용 후 전동기 상태 진단 및 성능평가 장비 구축을 통한 인 프라 조성
- 친환경차 사용 후 전동기의 상태 진단을 통한 등급 분류 및 재사용을 위한 성능 평가 장비 구축 및 연계
- 사용 후 전동기 재설계 및 상태진단 기술 지원

2. 기업지원 대상 및 내용

- (지원 대상) 친환경차용 전동기 및 전동기 관련 부품 제조기업 대상
- (지원 기간) 2025.4.1. ~ 2025.12.31. (9개월)

- (지원 내용) 사용 후 전동기 상태 진단 및 고장 검출 분석 기술지원
- 전문가 Pool 구성 및 매칭.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* 기업 추천 전문가가 있는 경우 가능 여부 검토 및 지원

지원분야	세부 내용	비	고
기술지도	전문가 Pool 활용 및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활용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데이터 수집·기술·분석 조사 등 지원 (수집 대상 데이터 종류: 전력/전류, 온/습도, 진동, 영상 등)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및 고장검출 상태 분류 지원	기업등 6건	: 최대 지원

3. 신청 자격 및 우대 사항

- (신청 자격) 친환경차용 전동기 및 전동기 부품 제조 기업
- (우대 사항) 친환경차용 전동기 및 전동기 관련 부품의 재제조 이력이 있을 시 우대
- (제외 대상)
- 지원기업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지원목적 및 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참여제한, 채무불이행 등 부실 수행 이력이 있는 경우

4. 지원절차 및 일정

※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추진내용	추진일정
사업공고 (https://www.keti.re.kr)	'25.4.1. ~ '25.12.31.
지원신청서 접수	'25.4.1. ~ '25.12.31. (상시)
선정평가 /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	'25.4.1. ~ '25.12.31. (상시)
⇒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	'25.4.1. ~ '25.12.31. (상시)
₩ 결과보고서 제출	'25.12.31. 이내

5. 신청서 접수 방법

- (신청기간) '25년 연중 상시접수 (예산 소진 시까지)
- (신청방법) 사업계획서(제출서류 포함) 작성 후 이메일 접수
 - * 접수처: jhchae@keti.re.kr
- ∘ (제출서류)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(이메일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	제출형식
1	지원신청서 1부 (직인 날인 후 스캔)	
2	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PDF 파일
3	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	

^{* 1}번 서류 양식은 https://www.keti.re.kr에서 다운로드 가능

6.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	연락처
한국전자기술연구원	채종혁	055-716-0372 jhchae@keti.re.kr

[붙임] 기술지도 전문가 활용비 지급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"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"사업(기업지원사업)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지도 및 전문가 활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가. "전문가"라 함은 관련 분야의 석사, 박사학위 소지자, 전문분야 업무 경력자 또는 전문 기업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을 말한다.

3. 수당지급 기준

- 가. 이 지침에 의하여 전문가에게 다음의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.
- 1)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: 상한액(시간당) 400,000원 (단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예외로 정한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한다.)
- 2)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외의 타소속 임직원

	구분	직급 구분		
	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이외의 타소속 임직원	기업 임원 또는 대학 학과장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	학사취득 및 10년 이상의 경력소유 석사취득 및 7년 이상의 경력소유 박사취득 및 5년 이상의 경력소유	그 외 경력소유자
Ĺ	상한액(시간당)	800,000	600,000	400,000

나. 위 기준에 의한 지급 상한액은 시간당 금액이며, 그 총액은 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